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이 태 인\*

### <목 차>

- I. 서론
- II. 보호관찰위원회의 역할
  - 1. 현행법상 심사위원회의 기능
  - 2. 심사위원의 임기 역할 및 권한
  - 3. 현행제도의 문제점
- III. 심사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활성화 방안
  - 1. 심사위의 기능강화의 필요성
  - 2. 심사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 IV. 결론

### I. 서론

범죄는 인류 창조 이후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담 이후 인류는 조상 아담의 원죄를 안고 출생하므로 본성이 악한 것이 되어 에덴 밖에서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후 국가 조직이 이루어지고 환경에 따라 생활하는 동안 각국은 역사와 전통을 달리하면서도 범죄문제는 인류 공통의 문제가 되어 현대에 와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서는 범죄문제에 대한 국제간의 공조체계도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범죄를 그 나라에 국한시키더라도 역사 이래 각국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대책을 수립해왔는데 처음에는 범죄발생의 원인을 분석하는 문제가 중요과제가 되었으나 이제는 범죄의 예방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이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범죄문제의 2대 과제는 여전히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구명하는 것과 발생된 범죄에 대한 대책인데 전자는 성격상 학문적 연구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후자의 경우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시책으로 대처하고 있다.

역사 이래 여러 과정을 겪어왔겠지만 현대 각국의 범죄대책은 시설내의 수용과 사회 내 처우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경향이 우세하나 각국의 형편에 따라 시설 내 처우를 중심으로 하면서 사회 내 처우로 보완하기도 하는 등 특징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범죄대책은 위의 두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데 수적으로는 사회 내 처우가 월등히 많으나 행형의 중심은 여전히 시설 내 처우로서의 교정행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책에서 나온 제도로 형법적 형벌론에 있어 교육형주의와 입장을 같이 한다. 보호관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각국의 경우 보호관찰을 이제 형법적 형벌론의 하나로 규정하여 법제를 통해 운용하고 있는데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통적 시설 내 처우보다 대상자가 월등히 많아 양적으로는 행형의 중심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보호관찰제도는 1989년 9월부터 공식적으로 실시되었는데 보호관찰법을 기초로 하여 제도의 운영이 이루어졌다. 이법에 의하면 보호관찰제도의 운영기구로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법상으로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상위기관 같으나 실제적 기능에 있어서는 대등하여 업무영역이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운영면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없고 보호관찰소의 예산에서 일부를 할당받아 집행할 뿐 아니라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보호관찰소의 인력적 지원을 받고 있어 보호관찰소에 병설이나 부설되어 있는 기관처럼 되어있다.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된 지 1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대상인원이 크게 늘어 업무량은 증대되었으나 관찰소의 인원이나 예산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효율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보호관찰법이 1996년에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확대 개편되어 심사위원회 기능이 크게 확충되었음에도 인적 구성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 있다.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현재적 입장에서도 좀 더 확대 내지는 실질화되어야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보호관찰제도의 양대 축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소의 기능적 역할의 재조정을 통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보호관찰소와 양립하는 보호관찰의 두 축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함으로 제도의 보다 나은 발전을 기하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 II.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역할

### 1. 현행법상 심사위원회의 기능

#### 1) 기능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고등검찰청 소재지를 비롯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데 보호관찰직제<sup>1)</sup>

1)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직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98년 5월 26일 대통령령 제714호로 공포되었는데 전문 8조와 부칙 2개로 구성되어 있다.

4 比較法學 (第17輯)

에 의하면 현재는 고등검찰청 소재지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곳에 설치되었다.<sup>2)</sup>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법제6조)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퇴원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 보호관찰중인 자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 회의가 소집되는데 회의 시에는 회의의 전·말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이를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이외의 회의 소집의 시기, 방법, 의결방법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 7조). 즉 심사위원은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대개 1개월에 1회씩 상임위원의 주선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법에 규정된 업무를 행하고 있다. 심사를 위한 자료는 적어도 1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심사대상자를 필요한 자료와 함께 통보해야 위원들이 자료의 조사 및 타당

2)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직제에 규정된 5개 심사위원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성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인데 위원들은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일상 업무의 종사자이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가 없으므로 어려움이 있다. 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신체 구속의 해제나 보호관찰의 해제 등에 관한 주요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예비 심사와 본 심사로 나누어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2)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법 제7조①항), 그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게 되어 있다.

위원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인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심사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다(법 제 7조). 위원회의 업무는 상임위원 등에 의해 기초되어서 전체 위원회에 회부되어 확정되어지고, 또 확정된 내용은 상임위원 등에 의해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이들 상임위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보호관찰시행령<sup>3)</sup>은 제3조에서 상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sup>4)</sup> 상임위원회에는 위원

3) 보호관찰시행령은 전문 37개조와 부칙 2개조로 되어 있는데, 1989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2736호로 공포되었다.

4) 2급 또는 3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② 대학에서 형사정책학·행형학·법리학·사회사업법·교육학·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③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 ④ 4급 이상의 교정직·보도직·보호관찰직·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⑤ 한국更生보호공단의 3급 이상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하고 있으며 4급 상당의 상임위원의 경우 ①②의 경우는 재직기간 제한 없이 자격만 있으면 족하고, ③의 경우는 10년 ④의 경우 5급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⑤의 경우는 4급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를 하고 있다(시행령 제3조).

지금은 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가 겸임하고 있으나 검사장급 검사를 전임적으로 하든지, 같은 급의 검사가 파견근무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과 심사위원 외에는 간사 1인, 서기 1인, 고용직 1인 등의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인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제2조). 위원장의 권한은 i)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는 일, ii) 심사위원회의 직원인 간사와 서기를 임명하는 일 (시행령 제4조 1항), iii) 심사사항을 의결한 후 결정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는 일 (시행령 제 6조), iv) 심사위원회가 개최하고 있는 동안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는 일, v) 기타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일(시행규칙 제 7조) 등이 있다.

위원장은 회의가 있을 때 출석하는데 4만원의 수당을 받는다.(시행규칙 제2조).

그런데 위원장의 임명에 대하여는 좀 더 진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현행법은 검사로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겸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와의 관계상 동일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원장인 검사는 소속 검찰청에 상임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가 없다. 아직은 초창기여서 업무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검사장급인 검사가 보호관찰심사위원장직을 전담해야 될 것으로 본다.

(2) 상임위원

① 임명

상임위원은 실질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상임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하는데(법 제10조),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직제에 의하면 2급 상당 상임위원은 서울, 3급 상당 상임위원은 부산·대구·광주·대전의 심사 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다(동 직제 제7조). 상임위원의 임명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조).

- i)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ii) 대학에서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iii)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공립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
- iv) 일반직 공무원으로 교정직 보도직·보호직·검찰사무직·법원사무직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v) 갱생보호회의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 ② 상임위원의 권한

보호관찰 심사회회의의 상근직으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원은 사실상 심사회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권한은 i) 직원인 간사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시행령 제 4조 ②) ii) 교도소·구치소·소년 교도소·소년원의 장이나 보호관찰관 범죄예방위원 등이 제출한 심사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시행령 제 5조 ③), iii)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요청으로 대상자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법 제 11조 ②) 등이다.

(3) 비상근위원

비상근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는데 법 제 7조 3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시행령 제3조 3항). 비상근위원은 회의가 있을 때 출석하며 여비 및 수당을 지급받는데,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의 출석 수당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여비는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출석 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기준 단가 상당액으로 하며 여비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의 여비 상당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 2조).

(4) 기타 직원

심사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는데, 간사는 보호관찰소 조사과(조사과 미설치 경우는 서무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간호과 직원 중에 임명할 수 있다(보호관찰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 5조). 서기는 2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 소재지 관할보호관찰소의 조사과(조사과 미설치의 경우 사무과)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간호과 소속 직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시행령 제4조). 심사위원회의 일반적인 사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담당한다(직제 제 61조).

2. 심사위원의 임기 역할 및 권한

1) 의의

보호관찰위원회와 보호관찰소는 업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의 일반업무를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나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에 사무과를 두고 일정 수의 일반적 공무원이 소속되어 위원회에 속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자료수집, 조



사, 예산에 있어서도 위원회는 독립된 관청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 임기 및 위촉·해촉

### (1) 임기

심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지만(법 제8조),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임위원은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전문가여야 하기 때문에 현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러나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공무원이 그 직위에 있을 동안에 국한한다(법 제 8조 단서).

### (2) 해임 또는 해촉

심사위원은 기왕에 축적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명 또는 위촉권자가 해임이나 해촉을 할 수 있다고 본다(법 제9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②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등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자원하여 사의를 표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3) 역할

### (1) 심사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의 장, 보호관찰관, 범죄예방위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①항). 또한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신문하거나 상임위원회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 11조 ② 항).

위에서 보호관찰관을 규정해 놓은 것은 보호관찰관이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하여야 할 협력사항이기 때문이고, 기타 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의 부모나 스승, 직장의 상관이나 동료 등 밀접한 생활관계인을 말한다.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는 가석방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자료의 확보 및 심증을 굳히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 (2) 의결 및 결정

심사위원회는 법 제 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관계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친 뒤에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법 제12조 ①항). 이 때의 결정사항은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때 결정서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법 제12조 ③항).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할 때에 신증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법 제12조②항).

#### 4) 심사위원회의 권한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 2항, 제48조 1항, 제50조 1항, 제52조 1항 3항 또는 제53조 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하는 과정에 심사 대상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장이나, 관할 보호 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시행령 제 10조). 이들 수용소의 장은 수용기간 동안 대상자들의 수용태도를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위원회의 결정에 참고되는 정보를 제공 할 뿐 아니라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할

수도 있다.

심사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소년원장으로부터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소년법 제 65조에 의해 무기형의 경우는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는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된 때나 보호소년이 수용된 지 6개월이 경과된 때는 소년원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는데 이 때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의 장은 해당 소년의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때 환경조사나 환경개선활동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가석방·가퇴원의 신청을 하는데, 심사위원회는 이 신청에 의해 심사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법 제23조 ①).

②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취소된 자의 명단과 결정서의 사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수용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 소년원 등)의 장에게 송부한다(규칙 제34조). 이 결과 가석방이 결정된 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 의해 보호관찰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가석방 등이 취소된 자들은 수용시설에 계속 유치되게 된다. 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가석방 등이 부결된 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여부를 심사할 때 본인의 인격, 교정성적, 직업, 생활태도, 가족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뿐 아니라(법 제23조③항),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사안 조사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의해 가퇴원, 가석방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나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법 제 25 조).

③ 심사위원회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가석방이나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때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

를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시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해야 한다(시행령 제 11조)

- i) 개정의 정이 현저할 것
- ii) 자립·갱생의 의욕이 인정될 것
- iii)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 iv) 사회의 감정이 가석방 또는 가퇴원을 인정한다고 인정될 것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지는 해석하여 처리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가석방·가퇴원이 취소된 자의 명단과 결정서 등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수용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규칙 제34조).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결정된 경우에도 법무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부적격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가석방 등의<sup>5)</sup> 결정은 그 당시 법무행정의 지침이나 범행자에 대한 사회의 감정 등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인 원칙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⑤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규칙 제 37조).

⑥ 심사위원회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가해제를 결정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규칙 제 39조)

가해제의 신청은 보호관찰소장이 하지만,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된다. 가해제가 결정될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종료하게 된다.

⑦ 심사위원회는 법 제52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가해제를 경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

---

5) 가석방이나 가퇴원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법무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가해야 하지만, 외적인 여건 즉 당시의 사회적 입장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다.

하여야 한다.

⑧ 심사위원회는 제53조 ①항에 의한 가석방·가퇴원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보호관찰 정지 결정을 한 후 소재 불명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정지결정을 취소해야 한다(제53조 ⑤항). 이 경우에 하는 보호관찰의 정지나 해제는 대상자의 소재 불명으로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의 장은 심사위원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여 보호관찰을 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즉시 신청대로 보호관찰 정지 결정을 해야 한다.

가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않으나 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는 계속된다. 그러나 가해제 중에 있는 자가 보호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가해제를 취소하는데 가해제 기간은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제52조 ④항).

가퇴원이나 가해제된 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보호관찰 정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소를 알게 되면 즉시 정지의 해제 결정을 해야 하며, 정지 중인 자가 구인이나 현장구속을 당한 때는 정지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53조 ①항 ②).

⑨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가 보호관찰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합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법 제48조 ①항). 수용시설의 장은 법 제27조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는 소년수형자 및 보호소년에 대한 기간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조 ①항). 위의 경우 통보한 사항 기타 신상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8조 ②항).

⑩ 심사위원회는 기간 경과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서식 제5호에 의해 기간통보서를 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2조).

⑪ 수용시설의 장은 기간 경과 통보서를 송부한 후에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을 다른 수용시설에 이송한 경우에는 제6호 서식의 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송부한다.

⑫ 이송통지서를 송부받은 심사위원회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이 다른 심사위원회의 관할 구역에 있는 수용시설에 이송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간 경과 통보서 등 관계서류를 당해 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관할사항은 종래 교도소와 소년원 내에 설치된 가석방, 가퇴원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대동소이한데 과거와 같이 교도소와 소년원 내에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수용자들에 대한 신변사항을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기능을 그대로 살리는 게 좋다는 견해도 있다.<sup>6)</sup> 그리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는 다만 보호관찰 즉, 사후관리에 따른 조치로서 보호관찰의 해제나 정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 5) 심사

심사회의를 함에 있어 상임위원이나 간사는 심사예정안건 요지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회의 5일 전까지 내용을 확정하고 사건별 심사판계자료의 사본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회의 2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배부해야 하며 필요한 때는 심사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사전에 소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심사위원회 운영세칙안 제10조).

심사자료가 미흡하거나 심사가 완결되지 않은 사건은 다음 회의로 결정을 보류하지만 완료된 사건은 각 사건마다 표결로 결정하는 데 결정을 함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의 기명·날인을 받아 비치, 보관해야 한다. 회의록에는 i) 회의 횟수, 일시 및 장소, ii) 출석한 위원이나 간사

6) 이재신, 보호관찰의 대상자와 기구에 관한 연구, 청소년범죄연구(제6집), 법무부, 1988, p.43.

나 서기, iii) 심사사건의 요지, iv) 심사 경위, v) 표결 및 결정사항, vi)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심사 운영세칙 제19조).

가출소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수용시설 내에서의 행형성적이 요건에 합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내의 환경조사의 결과도 크게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가출소 여부는 수용시설 내에서의 성적보다는 출소 후의 환경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견해에 따르면 현행법의 내용과 같이 가출소 등의 여부는 수용시설 밖의 기구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다.

가퇴원·가석방 심사결정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1> 가퇴원·가석방 심사결정 현황(1993-2002년) (단위: 명)

| 구분 |          | 연도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          | 계<br>(%)        | 3,784<br>(100)  | 4,482<br>(100)  | 4,556<br>(100)  | 6,222<br>(100)  | 7,664<br>(100)   | 10,429<br>(100)  | 17,749<br>(100)  | 16,567<br>(100)  | 17,104<br>(100)  | 15,017<br>(100) |
| 접수 | 가퇴원      | 2,219           | 2,807           | 3,000           | 3,343           | 2,846           | 2,524            | 2,524            | 2,302            | 2,766            | 1,953            |                 |
|    | 가석방      | 1,274           | 1,039           | 865             | 583             | 437             | 820              | 820              | 1,000            | 861              | 502              |                 |
|    | 취소       | 3               | 3               | 4               | 87              | 198             | 96               | 96               | 71               | 140              | 119              |                 |
|    | 기타       | 378             | 633             | 697             | 2,209           | 4,183           | 14,309           | 14,309           | 13,194           | 13,377           | 12,443           |                 |
|    | 계<br>(%) | 3,377<br>(89.2) | 3,877<br>(86.5) | 4,322<br>(94.7) | 6,002<br>(96.5) | 7,224<br>(94.3) | 10,192<br>(97.7) | 17,512<br>(98.7) | 16,363<br>(98.8) | 16,841<br>(98.4) | 14,977<br>(99.7) |                 |
| 허용 | 가퇴원      | 2,060           | 2,485           | 2,861           | 3,188           | 2,765           | 2,464            | 2,464            | 2,263            | 2,709            | 1,952            |                 |
|    | 가석방      | 937             | 759             | 768             | 524             | 394             | 669              | 669              | 861              | 695              | 496              |                 |
|    | 취소       | 3               | 3               | 2               | 83              | 196             | 94               | 94               | 67               | 137              | 118              |                 |
|    | 기타       | 378             | 630             | 691             | 2,207           | 3,869           | 6,965            | 14,285           | 13,172           | 13,300           | 12,411           |                 |
|    | 계<br>(%) | 3,377<br>(89.2) | 3,877<br>(86.5) | 4,322<br>(94.7) | 6,002<br>(96.5) | 7,224<br>(94.3) | 10,192<br>(97.7) | 17,512<br>(98.7) | 16,363<br>(98.8) | 16,841<br>(98.4) | 14,977<br>(99.7) |                 |

출처: 법무부 보호국 통계  
 취소: 가석방·가퇴원 취소  
 기타: 가해제, 보호관찰의 정지, 보호관찰필요거부 등.

### 3. 현행제도의 문제점

#### 1) 전임직원의 문제

1989년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되면서 심사위원회는 가석방·가퇴원의 심사업무만 담당하였으나 1995년 12월 형법개정으로 이들에 관한 조사업무를 맡게 되어 양적으로는 89년에 비해 1,767%가 증가했으나 직원은 17%정도 증가에 그친 데 불과하였다. 이 때문에 심사안건의 검토 및 자료마련 등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도 어려움이 많다. 심사위원회는 겸직인 위원장은 별도로 하고, 전임직원은 상임위원 1명과 기능직(9급) 1명뿐이다. 심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심사자료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 1명은 심사위원회 소재지의 보호관찰소 직원(7급)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심사위원회 소재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나 사무과장(5급)이 겸임하고 있어 사실상 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보호관찰소에서 파견된 서기 1명이 담당하는 실정이다.

#### 2) 예산의 독립

심사위원회는 업무는 보호관찰소의 상급기관적 성격을 수행하지만 인적구성 뿐 아니라 예산에 있어서도 독자적 편성권이 없고 보호관찰소의 한 부서로 취급되고 있어 업무의 원활을 꾀할 수 없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비공식적 활동비가 필요한데도 직접적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직원의 급여 외에는 경비의 융통성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3) 기능강화의 필요성

심사위원회의 사안에 대한 심사는 대부분 서류심사로 하고 있다. 가퇴원자나 가석방의 경우 수용여부를 결정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하는 일이 전부이고 가해제나 가해제 취소의 경우는 서류에 의해 일괄처리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가석방의 경우 대상자가 무기수이거나 일정



한 중범자에 대해 실질심사를 병행하고 또 가퇴원의 경우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부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운용할 뿐 아니라 특히 가퇴원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외에도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지난 5월 22일 지방선 거유세 중 서울에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테러범 池모씨가 보호관찰 가해제 중에 있는 자임이 밝혀진 것은 심사 절차의 필요성을 통감하는 계기가 된다.

### III. 심사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활성화 방안

#### 1. 심사위의 기능강화의 필요성

1) 독립적 기관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적으로는 보호관찰소의 상위기관적 기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업무수행에 있어 독자적 기구임에도 인적조직면에서나 물적 조직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소의 부속기관으로 되어 있다. 우선 인적구성으로 심사위원회의 전임직원은 상임위원이 유일하다. 서울을 제외한 4개 지역 심사위원회는 고검차장이 겸임하고 있는 위원장 직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9명 그리고 간사 1, 서기1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도 보호관찰소의 한 기관으로서 세워져 관찰소 예산에서 일정금액이 지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없고 인건비가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15년 전 출범 당시나 지금이나 업무수행을 위한 단력적인 활동을 할 여지가 없다. 어떤 기구이든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구성에 융통성이 있어야함에도 심사위원회는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적 물적(사무실 예산 등) 면에서 보호관찰소의 1개 계에도 못 미치는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인력확충의 필요성

최근에는 가석방 대상자에게 실질심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어 업무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는데도 인력은 거의 변동 없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1) 89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가석방·가퇴원의 심사업무만 담당하다가 95년 12월의 형법개정으로 심사대상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89년에 비해 업무량은 1,767%가 증가했는데도 직원은 17% 정도 증가에 그쳐 심사안건의 검토나 자료마련 등 기본적인 업무수행마저도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등 업무과중이 심각하다.<sup>7)</sup>

(2) 04년 4월부터 가석방 심사자료를 충실하게 마련하여 향후 보호관찰 처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심사대상자의 생계대책 등 사회내에서의 적응 여부와 가족의 보호의지 등을 직접 주거지를 방문하여 사안 조사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인데 충분한 조사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상태이다.

(3) 특히 가석방 신청대상자 중 신중검토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실질심사를 활용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사안 조사를 위해 판결 전 조사방식의 강화된 사안 조사<sup>8)</sup>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인적, 물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에는 가석방의 신중검토자에 대한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의견 합치율<sup>9)</sup>도 높아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사안조사의 적절한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7) 우리나라의 경우 직원 1인이 연간 1564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본의 갱생보호위원회는 1인당 연간 375건을 맡고 있어 우리는 일본의 5배에 달하는 건수를 처리하고 있다. 즉 한국은 직원 17명이 1년간 26,592건을 취급함에 비해 일본은 106명의 직원이 39,832건을 처리하고 있다.

8) 신중검토자에 대한 사안조사가 05년 4월 이후 강화되어졌는데 05년 5월에도 전국적으로 110명으로 급증했고 가석방회의 결과 사안조사서 의견 합치율이 이전보다 약 30% 이상 증가되었는데 이는 사안조사의 활용도가 높음을 말한다.

9) 의견합치율이란 가석방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부적격에 대한 사안조사의견과 이를 토대로 한 실제심사에 있어 가석방회의 결과가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가를 말한다.

| 연도<br>구분 | 04. 1 | 04. 2 | 04. 3 | 04. 4 | 04. 5 | 04. 6 | 04. 7 | 04. 8 | 04. 9 | 04. 10 | 04. 11 |
|----------|-------|-------|-------|-------|-------|-------|-------|-------|-------|--------|--------|
| 신중검토자건수  | 19    | 27    | 8     | 15    | 110   | 21    | 14    | 18    |       |        |        |
| 의견합치율    | 69%   | 63%   | 50%   | 87%   | 88%   | 91%   | 88%   | 67%   |       |        |        |

현재의 인력으로는 종전의 형식적 심사 자료를 마련하는데도 급급한데 심사 자료의 내실화를 위한 사안 조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부응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사안조사는 성격상 현장에서의 실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장실사를 수행할 여력이 보호관찰소의 업무과중으로 계속하여 이들과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관찰소의 직원이 심사를 위한 업무를 겸하게 되면 심사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침해적 소지가 있다는 외부적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관찰소로부터의 업무적 지원, 보조, 협조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 04년 6월 이후 신중검토자의 건수 감소와 04년 8월 의견합치율의 하락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예상했던 일이고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역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연도별 업무 및 직원 수의 변화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직원수에는 상임위원(별정직2급-4급상당) 5명이 포함됨)

| 연도 | 계      | 업무현황   |        | 직<br>원 | 89년 대비 증감(%) |       | 비고             |
|----|--------|--------|--------|--------|--------------|-------|----------------|
|    |        | 심사업무   | 조사업무   |        | 업무           | 직원    |                |
| 89 | 1.505  | 1.505  | -      | 13     | -            |       |                |
| 96 | 6.222  | 6.222  | -      | 16     |              |       | 95.7 대전 심사위 개칭 |
| 97 | 11.221 | 9.134  | 3.557  | 16     |              |       | 97.1 사안조사제 도입  |
| 01 | 27.355 | 17.124 | 10.231 | 17     |              |       |                |
| 02 | 26.800 | 15.682 | 11.118 | 17     |              |       |                |
| 03 | 26.592 | 15.009 | 11.583 | 17     | 증 1.767%     | 증 14% |                |

앞의 표에서 보듯이 심사위원회의 업무량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인력의 증원은 미미하여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원활한 심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는 실정이다. 심사청원기관인 교도소나 소년원, 보호관찰소에서 요구해온 내용을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수준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체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기왕에 설치되어 시행되고 있는 기구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심도 있는 실질적 심사가 필요한 것이다.

## 2. 심사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심사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간의 업무조정으로 인한 영역의 확충과 현재의 업무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 1) 현행규정상의 활성화 방안

#### (1) 소년가석방, 가퇴원 심사의 실질화

89년 심사위원회가 출범하여 2000년 초에 이르도록 가석방이나 가퇴원 심사는 서류심사적 방식이었다가 2002년 이후 실질심사를 활용하게 되었다. 가석방의 경우 경미하고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적 방식이 무방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죄질이나 수형량을 고려하여 비교적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실질심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7-8건 정도(부산의 경우)에 불과하다. 실질심사는 무기수이거나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매회 1건 정도를 선정하여 회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질심사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1회의 회의 때 2건 이상 취급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실질심사 1건에 1시간가량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담당교도관, 경찰관, 본인, 부모 등 관련 인사들에 대한 청문을 하다 보니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담당교도관을 통한 행형상황은

신청 당시의 서류적 의견 표시로도 가능할 것 같아 본인의 의지와 보호자의 보호의지를 청취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질심사는 실질심사 대상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느끼는 체험적 사실과 대화를 통한 의지적 상황을 파악하는게 중심과제이기 때문이며 가석방 이후의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보호자의 의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같은 절차를 통해서 대상자의 재비행가능성이나 사회적응 가능성을 대충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질심사에 회부하는 과정에도 심사위원의 소속 공무원이 사전에 현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기 위한 선행적 조사가 필요하여 수형자의 입소에서 가석방 신청시까지 수형생활 전반에 관한 기록과 증빙서류 보호자의 인수각서, 또 관련된 전직의 직장이나 학교 등의 각종 기록부 등 수집가능한 배경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할 것이다. 가석방이나 가퇴원에 있어 종래와 같이 타수형자들과의 상대 비교로 인한 적당한 선에서 가석방되는 관행을 개선하여 수형자의 재활의지와 준법의식, 사회적 적응성에 따른 차별화된 가석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직권심사의 강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3조 2항에는 i) 교도소장은 소년법에 대해 소년법 제65조에 의한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경우, ii) 소년원장은 소년원에 수용된 후 6월을 경과한 사람은 그 사실을 해당심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89년 이후 16년이 경과된 이 시점까지도 이 같은 통보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관에 따라서는 심사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통보조차 않는 기관도 있으나 어느 경우이건 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현재는 수용기관에서의 가석방 선정기준은 실제법상에 규정된 형기의 1/3을 경과한 수용자 중에서 기관 스스로 개개인의 사회적응 가능성과 개선의 정도 또는 재범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다

른 수형자들과의 형평에 입각한 상대평가에 의해 정해진 수용자를 매월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호관찰제도 내지 심사위원회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또는 가석방의 일원화나 사회내처우로서의 보호관찰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인권 보호적 입장에서도 가석방이나 가퇴원의 기간이 경과된 사람 모두를 심사위원회에 통고하도록 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이들 통보자들에게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자를 직권으로 심사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가석방이나 가퇴원 신청 통보자들이 해당기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청원하면 거의 대부분이 수용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해당기관의 통보대상자 결정이 바로 가석방이나 가퇴원으로 연결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3) 가퇴원제도의 개선

가퇴원은 형사정책상 은전적 조치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수용자라 하더라도 교정성적이 좋고 재범의 가능성이 적을 경우 국가가 격려적, 은전(恩典)적 조치로서 시행하는 제도임이 분명하다. 현행법상은 가퇴원과 퇴원결정이 2원화 되어있는데

i) 퇴원결정권은 해당 소년원장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고

ii) 가퇴원은 소년원법제44조에 의해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sup>10)</sup>

그런데 소년원에서는 소년원법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 즉 보호소년수용지침 제55조(일반과정대상자의 퇴원, 가퇴원 신청기준)에 의해 ① 학생(소년원생)의 교정종합성적이 '수'에 해당하고 재처우심사결

10) 소년원법 제44조

정과 사회복귀 후 재비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퇴원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중징계 경력이 있거나 경징계 2회 이상의 경력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에는 가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2003. 9. 1)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동 지침 ②는 학생의 교정종합성적이 ‘우’에 해당하여 성행의 교정이 달성되었으나 환경의 조정 등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2003. 9. 1 개정)고 되어있다.

더욱이 소년원법 제56조(단기 과정 대상자의 퇴원 가퇴원신청)① 학생이 교정종합성적이 ‘수’에 해당하거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수용기간 잔여일수가 20일 미만일 때에는 퇴원을 신청해야한다. 다만 중징계 경력자 또는 경징계 2회 이상 경력자와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03.9.1 개정).

② 단기과정 대상자의 교정종합성적이 “우”에 해당하거나 수용기간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4월을 경과한 자로서 성행의 교정이 달성되었으나 환경의 조정 등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03.9.1 개정)라고 되었다.

그러나 위의 제44조와 제56조의 규정은 논리적으로 부당하다. 즉 사회복귀 후 재비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자는 만기 퇴원조치를 하고 재비행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상자를 만기 퇴원에 앞서 가퇴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주객의 전도현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퇴원의 조건으로는 i) 만기가 되었거나 ii) 교정성적이 “수”에 대하는 자로 수용의 잔여일수가 20일 미만일 때로 하고 있으나 결국 만기가 되기 전 20일 이내에 미리 퇴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은전적 의미가 크게 퇴색되어 있다.

그러나 가퇴원의 경우는 교정성적이 “수”에 해당하는 자라도 i) 중징계나 경징계 2회 이상 있거나 ii)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iii) 종합

성적이 “우”에 해당하고 성행의 교정이 달성되었으나 환경의 조정 등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iv) 단기 과정 대상자의 교정 성적이 “우”에 해당하거나 수용기간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4월을 경과한자로서 성행의 교정이 달성되었으나 환경의 조정 등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퇴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퇴원 대상자는 퇴원 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교정 상황이 좋지 않은 자인데도 교정성적이 좋은 퇴원자는 20일 미만의 은전을 입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교정성적이나 재비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퇴원자는 20일 미만의 은전을 볼 수 있는데 대해 교정성적이나 재비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에게는 4개월의 은전을 입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교정성적이 좋은 자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고 위험성이 높은 자에게 은전의 혜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나 행형학적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년원장은 소년원법이나 보호 소년 수용자들에 의한 퇴원·가퇴원 보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2항에 의거하여 소년법 제65조(가석방)의 기간을 경과한 대상자(수용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를 심사위원회에 일률적으로 통보함으로써 가퇴원 대상자를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형법에 의한 가석방(형기의 1/3 경과) 소년법에 의한 가퇴원 기간(수용 후 6개월 경과)만 경과 하면 가석방이나 가퇴원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용기간이 80% 이상 경과된 자들 즉 가퇴원의 경우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상태에 있는 자들만 가퇴원 하고 있는 상황이 개선되어 직전심사를 통해 형사정책적 은전 조치인 가퇴원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퇴원은 개선정도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여 교정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를 계속 수용하였다가 만기 퇴원케 함으로써 은전적 의미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년비행자에 대해 법원소년부에서는 보호관찰처분만 결정할 뿐 처분



의 기간은 소년원에서 급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용기간은 A, B, C 대상자에게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 2) 법 영역의 활성화

심사위원회는 법제6조에 의해 ①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② 소년원등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에 대한 가퇴원이나 그 취소에 대한 사항, ③ 보호관찰소에 의해 보호 관찰중에 있는 자의 가해제나 취소, ④ 보호관찰소에 의해 보호관찰대상자가 소정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 보호관찰의 정지나 취소 ⑤ 교도소 재소자가 부정기형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경우에 형기종료에 대한 사항 등에 관한 중요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활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도 없지 않다.

① 성인 수형자에 대해 행형법 제 52조에 의해 가석방되는 자에 대해 보호관찰이 달리 필요한가의 여부에 관한 심사를 위해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로부터 가석방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를 넘겨받아야 하며 (법제 28조①항)

② 이 경우 관계 서류와 함께 성인 수형자를 면담하여 직접 제26조에 규정된 사항(환경조사)과 석방 후 재범의 위험성 및 사회 생활에 대한 적응 가능성의 조사(보호관찰사안조사)를 하거나,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나 당해 성인수형자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그 자료를 송부받아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하는 것과 ③ 가해제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관찰 소장이나 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가해제를 취소하는 것(법 52조②) ④ 소년법 제6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형의 선고를 받은 후 가석방된 자가 그 형의 단기가 경과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동법 제 66조에 정한 기간 전에도 보호관찰소장이나 심사회원회의 직권으로 집행의 종료를 결정하는 등이다.

출생률의 저하가 소년범의 절대적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보호관찰의 주된대상이 소년에서 성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도의 운영에도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종래에는 심사회회의의 대상이 소년원생에 대한 가퇴원이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가석방,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가해제가 대종을 이루고 가퇴원 대상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게 되었다. 가해제의 대상도 재판에서 단기자유형의 중심이 교통범죄나 사기죄 관련 재산범죄, 주로 카드나 할부 등 신용관계·범죄가 중심이 되므로 역시 성인범죄적인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조직의 재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적인 변화에 맞추어 입법적으로도 심사회회의의 영역을 확충하므로써 보호관찰소의 역할을 보다 전문화·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IV. 결론

보호관찰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심사회회의와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었는데 양자의 관계가 이원적인 것도 아니고 심사회회의가 상급기관적인 일원적인 것도 아니다. 보호관찰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소년부와 제한적 의미에서 보호관찰 심사회회의인데 법원은 가벼운 소년범에 대해 실행대신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수감명령 등을 부과하고, 심사회회의는 소년원이나 구치소·교도소에서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에 부칠 것인가, 부치는 경우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므로 보호관찰 실시에 있어 2차적일 수밖에 없다.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에 있어 심사회회의는 각종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이

고, 보호 관찰소는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원의 판결과 심사회의의 결정 사항을 실시하는 곳이다.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던 90년에 비해 출생률의 저하로 소년인구가 급감함으로써 소년보호의 목적으로 실시된 보호관찰 제도가 단기 자유형적 성인들을 위한 사후적 추수제도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이, 원점에서, 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소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각종범죄자에 대한 교정 대책 중 대상인원의 면에서도 교도소적인 시설 내 수용보다는 보호관찰 중심의 사회 내 처우가 월등하게 많은데 차제에 교정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교정제도의 전문화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심사위원회를 전체 교정제도에 있어 상급 기관적 입장에 두고 그 아래에 사회적 처우와 시설 내 처우를 이원화 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심사위원회의 위치를 입법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교정제도 전반에 대한 재배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현실 때문에 처음에 의도한 논문이 되지 못하였다. 차제에 교정제도 전반에 걸쳐, 시대에 알맞은 재검토 작업을 통해 심사회의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될 것을 제의하는 바이다.

<Abstract>

Study on the Active Method of Inspection Board of  
Probation and Parole

Lee, Tae-Eun

Probation system introduced at 1990, 17 years ago. It has made significant change that have improved the rules and justice system. We can say probation system is the core of correction system, because offenders, who provide probation system are 0.14 million each year and 0.06-0.07 million people in a prison.

In this dissertation, I proposed the manner for activation of Inspection board of probation and parole, which the two main organization for development of probation system. Inspection Board of probation and parole is decision unit and is different from probation office which acts probation. I studied the methodology for expanding its role, because Inspection board had too small role so far, compared with probation office.

For this, I studied the ideal role of Inspection board, and made some proposal. But it's not enough.

I wish probation system develop day by day through collaboration with Inspection board.